

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2차 본회의(2023. 6. 13.)

「평창군 출향군민 교류·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출향군민 교류·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5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, 관련 교류·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출향군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높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3) 교류·협력 사업에 대한 명시(안 제4조)
- 4) 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혜택 규정(안 제5조)
- 5)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 관리 규정(안 제6조)
- 6) 군정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규정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·협력 증진을 지원하여
군민의 역량 집결 및 평창군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출향군민 및 출향단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,
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,
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공로에 대한 포상을
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○ 검토결과,

‘출향군민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지원’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
지자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이고,
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 등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규정하였으므로,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